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인슈코아 보험대리점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6. (검사서 통보일)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설계사	과태료(900만원)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

- ☐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는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
- (주)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2020.10.8.~2021.3.27.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△△△(무자격)에게 ◎◎보험(주) '◇◇보험'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 총 0.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1항 제2호